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안교육기관 전출·중도이탈 시 학교장 통보 의무 신설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2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안교육기관 전출·중도이탈 시 학교장 통보 의무 신설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안교육기관 전출·중도이탈 시 학교장 통보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취학의무 유예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을 이동하거나 그만둘 경우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를 받은 대안학교²⁾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 5조³⁾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2025년 9월 기준 총 26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재학생 수는 총 11,772명임.

<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10	7	8	13	11	2	1	7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6	11	12	7	9	267

자료: 교육부, '25.9. 기준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 >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초중(통합)	중·고(통합)	초중고(통합)	기타	합계
학생 수(명)	2,819	1,820	1,797	616	1,235	2,796	689	11,772

자료: 교육부, '24.7. 기준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함.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5. 4.)	267개 등록 (’25. 9.)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수업료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자율로 정함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이 취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는 대안교육기관 재원으로 취학의무가 유예된 학생이 법정 의무교육 체계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학적·취학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에 새로 등록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만 기관장이 학교장에게 인적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학생의 이동이나 중도이탈 시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워 학적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경로 변동을 신속히 인지하여 학업 중단 우려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현행 학적관리 제도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은 취학 독촉 및 경고, 가정방문 등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취학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⁶⁾.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적관리의 공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임.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으로부터 명확한 퇴원 의사표시를 받지 못해 통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 결과, 정상적으로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 취지와 달리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과태료 규정을 두어 일정한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⁶⁾, 개정 대상 조항인 제10조는 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의 이동이나 중도이탈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하는 학생의 인적사항 정보를 취학예정 또는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원학생이 이동 또는 퇴원하는 등 학적을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적교의 학교장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공교육으로 복귀지원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적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학생의 학적 변동 정보를 원적교 학교장에 통보할 의무를 법률에 별도 규정할 필요성에 공감함
○ 전남교육청: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함
○ 전남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중검토 -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대안교육 대상을 잠재적 관리·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처사임 -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안교육기관에 잦은 학적 변동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소모를 야기하여 교육 본연의 질적 성장을 저해함

문 의 처

02)6788-5184